

인천지방법원 2017. 11. 23 선고 2017가단26859 판결 [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11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5. 11.부터 2017. 8. 26.까지는 연 5%, 2017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(단, 채권자는 원고로,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)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오창민

별지